18.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 기금개요

설치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설치년도	2005년	운용개시년도	2005년
주 무 부 처	농림축산식품부	기금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관리방식	위탁관리	위탁관리기관	농업정책자금관리단

2. 평가결과 요약표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개별사업	평가결과	근 거
		부적정사업 없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중기가용자산 적정	중기가용자산의 규모는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음.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결과	평가결과 근거 및 조치사항	
존 치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 기반 확보와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차별적이고 성과도 있음.	

3. 존치평가 총평

-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국가 재보험사업에 거대재해 발생시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 도입된 이래 현재 46개 작물, 8만9천 농어가가가입되어 있다. 재해보험에 거대재해 발생으로 일정 손해율(농작물 위험군별 150%~ 180%, 양식수산물 140%)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지급해야하는 재보험금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 □ 자연재해는 항상 발생할 수 있고 피해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거대재해의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으로 이를 대비한 재보험기금의 운영 및 지급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에만 전적으로 맡겼을 경우 위험분산체계가 해체될 수 있음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므로 기금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 □ 본 기금은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의 재보험료수입, 정부출연금, 자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목적사업과의 연계성은 높으며 자체수입비중 및 정부내부수입 비중은 적정하다. 아울러 2012년 거대 재해로 인하여 소진된 재원이 안정된 손해율로 적립된 재보험료수입 등으로 인하여 안정화되어 현재 적정중기가용자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본 기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어가의 소득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는 실제 소득변동폭이 감소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현재에도 여전히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
- □ 본 기금은 향후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보험상품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입률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① 개별사업의 적정성

1. 사업 설치목적의 유효성

- >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은 재해보험사업자와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보험기금을 설치하고 거대재해 발생시 기금으로 국가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 목적이 일치함.
 - 농어가는 다른 어떤 산업부문 사업자보다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기 쉬우며 그 손해를 스스로 회복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농어가의 재생산활동을 보장하고 그로부터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국민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외부효과와 공익성이 있음으로 국가가 일정한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거대재해 발생시 과도한 보험금 지급은 재해보험사업자의 경영위기를 야기하여 사업자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위험을 국가재보험제도를 통해 뒷받침함.
- 국가재보험제도 강화를 통해 재해보험사업 활성화 및 농어가 경영안정, 나아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중장기 비전으로부터 사업목적이 도출되었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농어가에 대한 소득분석 결과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재보험금 지급률, 재보험금 적기지급률, 기준수익률 대비 운용수익률,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수, 보험가입률, 보장법위 확대 등을 성과지표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성과평가 결과 양호한 것으로 집계됨.

2. 사업주체의 적합성

- 거대재해 발생시 국가가 기준손해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지원해주는 재보험금 지급사업은 손해발생 여부 및 규모 등을 정확히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사업으로 수행하기는 어렵고 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함.
 - 거대재해의 발생시기를 예측해 국가재보험금으로 지급할 필요재원을 사전에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대재해가 발생한 해와 그렇지 않은 해의 재정소요 차이로 인해 정부재정의 안정화를 방해할 수 있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선진국들의 경우도 특수 목적의 기금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
- 또한 국가재보험 및 재보험금 지급사업은 재해보험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에 이관하기는 한계가 있음.
 - 국가재보험제도 및 재보험금 지급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요구로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민간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가재보험제도를 요구하였음.
 - 재해보험사업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임으로 그 위험이나 위험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민간사업자가 보험상품 개발 및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분야임.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국가재보험 및 재보험금 지급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기반 구축과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차별적인 사업으로서 타 예산사업 혹은 타 기금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지는 않음.

② 재원구조의 적정성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의 재보험료수입, 정부출연금, 자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기금 목적사업과 연계성이 높음.
 - 본 기금의 초기에는 적정 여유재원의 미적립으로 자체수입 대비 정부로부터의 기금출연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현재에는 재해보험사업의 안정 등으로 자체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자체수입 비중은 자체수입이 총 지출(사업비 + 기금운영비 + 차입금이자상환)에 대하여 442%이므로 기준치인 2/3를 초과하므로 적정함.
- o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비중은 총수입에서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이 차지 하는 비율이 20% 정도로서 기준치인 1/2 이하이므로 적정함.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 ㅇ 본 기금은 중기가용자산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음.
 - 본 기금은 2012년 거대 재해로 인하여 소진된 기금재원이 이후 안정된 손해율로 재적립되어 현재 중기가용자산의 규모는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에도 재보험료 수입 확대 및 손해율의 안정이 이루어질 경우 적정규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③ 기금존치의 타당성

1. 기금목적의 유효성

재보험기금 및 국가재보험금 지급사업은 빈번한 기후변화를 고려할때 향후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음으로 재보험기금 설치의 유효성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됨.

-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작물 및 양식수산물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은 점차 증가하는 상황임으로 농어가의 소득변동성을 줄여주는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확대가 필수적임.
-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 예상됨.
- 선진국의 경우에도 재해농가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보다는 보험제도를 통해 재해손실을 보상하는 추세임.
- > 농어가 경영안정 제고라는 목표 대비 성과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어 기금목적의 유효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2.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재보험기금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안정기반 확보와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거대재해시에 기준손해율을 초과하는 손해를 재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기금으로서는 유일함.
 - 다만, 추후 수입보장보험이 시범사업 단계를 지나 확장되게 되면 보다 종합 적인 보험으로서 일부 품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근거로 거대재해시에 재보험금 지급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여타 기금과 비교시에 설치목적이나 내용이 차별적이므로 중복성・유사성은 없다고 판단됨.

3.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ㅇ 해당사항 없음.